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6년 9월 29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
(영문명) kakaopay securities Corp.
(홈페이지) <http://www.kakaopaysec.com>

본 점 소 재 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, 비동 8층 (백현동, 카카오판교아지트)
(전 화) 1600-8515

대 표 이 사 : 신 호 철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관리총괄
(성 명) 이 주 랑 (전 화) 02-6099-8472

작 성 자 : (직 책) 경영관리팀원
(성 명) 이 선 경 (전 화) 02-6099-8498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5-1-1호)

유상증자 결정

1. 신주의 종류와 수	보통주식 (주)	445,573
	기타주식 (주)	-
2. 1주당 액면가액 (원)		5,000
3.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(주)	보통주식 (주)	10,766,731
	기타주식 (주)	-
4. 자금조달의 목적	시설자금 (원)	-
	운영자금 (원)	-
	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(원)	26,444,311,977
	기타자금 (원)	-
5. 증자방식		주주배정증자

※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

정관의 근거	제6조(1주의 금액)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금 5,000원으로 한다.
	제8조(주식의 종류)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	제10조(신주인수권)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	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 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주식의 내용	보통주식
기타	-

【주주배정증자의 경우】

6. 신주 발행가액	확정발행가	보통주식 (원)	-		
		기타주식 (원)	-		
	예정발행가	보통주식 (원)	59,349	확정예정일	-
		기타주식 (원)	-	확정예정일	-
7. 발행가 산정방법			외부기관(한미회계법인)의 평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		
8. 신주배정기준일			-		
9.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(주)			0.0423130		
10.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(%)			-		
11. 청약예정일	우리사주조합		-		
	구주주		-		
12. 납입일			2026-12-15		
13. 실권주 처리계획			단일 주주의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으로서 실권주 미발생		
14. 신주의 배당기산일			2025-12-31		
15. 신주권교부예정일			납입일의 익일		
16. 신주의 상장예정일			-		
17. 대표주관회사(직접공모가 아닌 경우)			-		
18. 신주인수권양도여부			-		
-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			-		
-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			-		
19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	2026-09-29		
- 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(명)		2		
	불참(명)		0		
- 감사(감사위원)참석 여부			여		
20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			부		
21.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			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함		
22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			여		
2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	(1) 본건 유상증자는 상법 제422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(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음) 및 법원의 심사·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 발행으로서, 아래 항목에 관하여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감정결과 심사에 따른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- 6. 신주 발행가액 및 신주발행가액 확정예정일		

	- 9.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(주) - 11. 청약예정일-구주주 - 15. 신주권교부예정일 (2) '12. 납입일'은 2026-12-15 또는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대한 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 중 늦은 날이 될 예정임. (3) '14. 신주의 배당기산일'은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인가 등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2026년 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변동될 수 있음. (4)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인가 완료 및 인가서 수신시 정정공시 예정임.
--	--

<기재상의 주의>

주1)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한다.

주2) “신주의 종류와 수”, “증자 전 발행주식총수”, “신주 발행가액”에는 보통주식과 기타주식을 구분하여 기재한다.

가. 보통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주식

나. 기타주식 :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상기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주식

주3) “증자전 발행주식총수”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해당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한다.

주4) “증자방식”에는 주주배정증자, 주주우선공모증자,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한다.

주5) “기타주식에 관한 사항”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에 관한 정관의 근거, 해당 주식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. 해당 주식의 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-4-3조(다양한 종류의 주식)의 작성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.

주6) “신주발행가액”은 공시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발행가를, 예정가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발행가 및 확정예정일을 기재한다.

주7) “발행가 산정방법”은 기준주가 결정방식 및 적용 할인율 또는 할증율 등을 기재한다. 이 경우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보고일 현재 이사회 등에서 정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을 말한다.

주8) “신주발행가액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“발행가 산정방법”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
- 주9) “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”은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 5-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기재하고,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에서 정한 할증율을 기재한다.
- 주10) “1주당 신주배정주식수”는 소유주식 1주당 유상으로 배정할 신주의 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11) 【제3자배정 근거, 목적 등】의 “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”에는 3자배정 증자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회사의 정관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“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”에는 3자배정 증자의 사유, 증자대금의 사용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.
- 주12) 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의 “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”에는 최대주주, 그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, 계열회사, 기타 등으로 기재하며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구체적인 관계를 비교란에 별도로 기재한다.
(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, 최대주주인 (주)ABC의 임원
- 주13) 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, 거래내역, 배정내역 등】의 “선정경위”에는 3자배정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, “증자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”에는 이사회결의일 전후 6월 동안의 회사와 배정대상 제3자 와의 거래내역 및 향후 계획(제품매출·매입, 자산매각·매수, 담보 제공 등 제반거래 포함)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“비고”에는 보호예수 기간 등을 기재한다.
- 주14) 【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】에는 제3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신주인수를 통해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에 기재한다. 이 때 “최대주주”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하며, 이 경우 “금융회사”는 “법인 또는 단체”로 본다.
- 주15)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, 신주권교부예정일, 단주처리방법,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,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6)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7) “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”는 해당 보고사항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“대규모내부거래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)” 해당여부를 기재한다.